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(경 유)

제 목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개진 요청

1. 전세연 제2023-36호(2023.5.2.)와 관련입니다.

2. “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시 차령 요건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는 내용”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(강대식 의원 대표발의, `23.04.28)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기간(`23.05.02 ~ `23.05.11)동안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사오니, 각 사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가. 입법예고기간

[의안번호 2121715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`23.05.02~`23.05.11)

※ 서전번호 23- 104호(2023.05.03.)

나. 의견 개진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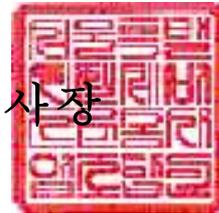
국회 입법예고 시스템(<http://pal.assembly.go.kr/napal/main/main.do>)
접속 -> 진행중 입법예고 클릭 -> 법률안명 검색 (여객자동차 운수사업
법 일부개정법률안) -> 의안번호 확인 후 해당 법률안 클릭
-> 의견등록 클릭 -> 내용 작성 후 등록

※ 조합 홈페이지 공문에 바로가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.

※ 붙임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. [끝]

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이사장
(전결)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3- 104호 (2023.05.03) 접수 (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